■ 검찰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60호서식]

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

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○○○ 검찰청

검사 인

사 건 번 호	년 형제 호
결 정 일 자	. . .

결 정 죄 명	결 정 결 과

-결정결과에 대한 안내-

1. **'구공판, 구약식'**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,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(safind.scout.go.kr/sf/mysafind.jsp)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**'기소유예'**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.
3. **'혐의없음'**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4. **'죄가안됨'**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5. **'공소권없음'**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6. **'각하'** 결정은 위 2~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,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.
7. **'참고인중지'** 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.
8. **'보완수사요구(결정)'**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,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  ※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(제59조제1항)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9. **'공소보류'**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(공소보류)에 따라 형법 제51조(양형의 조건)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.
10. **'이송'**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.
11. **'소년보호사건 송치'**, **'가정보호사건 송치'**, **'성매매보호사건 송치'**, **'아동보호사건 송치'**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.

※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-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